

은第五十六條의審判에對하여이를準用한다

② 第七條의規定은前項의審判에對하여이를適用하지아니한다

第百十七條 (抗告審判의請求) 査定 또는審判의審決을받은者가不服이 있을 때에는그査定또는審決의送達을받은날로부터三十日以内에抗告審判을請求할수있다. 但第百十四條의規定에依한補償金額의審決및第百四十一條第一項의規定에依한費用의審決에對하여는例外로한다

第百十八條 (審判의規定의準用) 第九十二條, 第九十六條및第九十八條乃至第百十四條의規定은抗告審判에對하여도이를準用한다. 但審判官의合議는三人 또는五人으로써이를行한다

第百十九條 (補正不能한抗告審判請求의却下) 不適法한審判請求로서그欠缺을補正할수없을 때에는被請求人에게答辯書提出의機會를주지아니하고抗告審判의審決로서이를却下할수있다

第百二十條 (抗告審判請求의取下) 抗告審判請求는그審決이終結될때까지이를取下할수있다

第百二十一條 (抗告審判請求權의拋棄) ① 抗告審判의請求權은그審理가終結될때까지이를拋棄할수있다

② 抗告審判을請求한後抗告審判請求權을拋棄한 때에는抗告審判請求에對하여도이를取下한것으로본다

第百二十二條 (請求理由의變更等) 抗告審判에있어서는審判請求의理由를變更하거나새로운事實 또는證據方法을提出할수있다

第百二十三條 (審査, 審判節次의效力) 審査 또는審判에서받은節次는抗告審判에서도그效力이있다

第百二十四條 (審決) 抗告審判에對하는事件에對하여審決을하여야한다

第百二十五條 (法令違反에依한破毀) 査定 또는審判의節次가法令에違反된 때에는抗告審判의審判官은그査定 또는審決을破毀하여야한다

第百二十六條 (準用規定) ① 第七十四條의規定은拒絕査定에對한抗告審判에서그査定理由와다른拒絕理由를發見한境遇에도이를準用한다

② 第七十五條乃至第八十一條의規定은拒絕査定에對한抗告審判의請求가理由있다고하는境遇에도이를準用한다. 但이出願公告가있는特許出願에對하여는出願公告를하지아니하고審決을하여야한다

③ 前二項의規定은第五十六條의許可를附與하지아니하는審決에對한抗告審判에이를準用한다

第百二十七條 (還送) ① 抗告審判에서査定 또는審判의審決을破毀한境遇

에는査定에對한抗告審判에있어서는審査에, 審判의審決에對한抗告審判에있어서는審判에불일 것 이라는審決을할수있다

② 前項의規定에依한審決에있어서破毀의基本이된理由는그事件에對하여審査官 또는審判官을羈束한다

第六章 再審

第百二十八條 (再審의請求) ① 다음을確定된審判, 抗告審判의審決에對하여는再審의請求로서不服을申請할수있다

一, 特許나第五十六條의許可의效力, 特許權의範圍 또는實施權取得에關한審判

二, 前號審判의審決에對한抗告審判

② 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條의規定은再審請求에對하여이를準用한다

第百二十九條 (再審請求期間) ① 再審은當事者가不服의理由를안날로부터三十日以内에限하여이를請求할수있다

② 審決確定前에當事者가不服의理由를알았을 때에는前項의期間은審決이確定된날의翌日로부터이를起算한다

③ 審決이確定한날로부터三年을經過한 때에는再審을請求하지못한다

④ 不服의理由가審決이確定한後에發生한 때에는前項의規定에依한期間은그理由가發生한날의翌日로부터이를

起算한다

⑤ 第一項 및 第三項의規定은不服申請을한審決이前에한確定審決과抵觸한다는理由로써再審을請求한境遇에는이를適用하지아니한다

第百三十條 (各審級의規定의準用) 審判, 抗告審判 또는上告에서하는再審請求 및 그後의節次에對하여는本章에別段의規定이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各各그審級の節次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第百三十一條 (準用規定) 民事訴訟法第四百二十條, 第四百二十一條 및 第四百二十五條乃至第四百二十七條의規定은審判 또는抗告審判에서하는再審에對하여이를準用한다

第百三十二條 (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의效力制限) 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境遇의特許權의效力은審決의確定이있은後再審請求登錄前에善意로輸入 또는國內에서製作하거나取得한物件에미치지아니한다

一, 無效로된特許權이再審에依하여回復된 때

二, 特許權의範圍에屬하지아니한다는審決이確定된것에對하여再審에서와相反되는審決이確定되었을 때

第百三十三條 (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에對한先使用者의實施權)

① 前條各號의一에該當하는境遇에審

判官은先使用者가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을行使할수없다

② 前條各號의二에該當하는境遇에審判官은先使用者가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을行使할수있다

③ 前條各號의三에該當하는境遇에審判官은先使用者가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을行使할수있다

④ 前條各號의四에該當하는境遇에審判官은先使用者가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을行使할수있다

⑤ 前條各號의五에該當하는境遇에審判官은先使用者가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을行使할수있다

⑥ 前條各號의六에該當하는境遇에審判官은先使用者가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을行使할수있다

⑦ 前條各號의七에該當하는境遇에審判官은先使用者가再審에依하여回復한特許權을行使할수있다

는判決에關與한때

七、審判官이事件에關하여直接利害關係를 가진 때

第百條 (除斥申請) 除斥原因이 있을 때에當事者 또는參加人은除斥申請을 할 수 있다

第百一條 (審判官의忌避) ①審判官에게審判의公正을妨害할事情이 있을 때에는當事者 또는參加人은이를忌避할 수 있다

②當事者 또는參加人은事件에對하여陳述을한後에는審判官을忌避할 수 없다 但忌避의原因이 있는것을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忌避의原因이 그後에發生한 때에는例外로 한다

第百二條 (除斥忌避의疏明) ①前二條의規定에依한申請은그原因을書面으로疏明하여야 한다 但口頭審理에서口頭로써 할 수 있다

②除斥 또는忌避의原因은申請한 날로부터十日以內에疏明하여야 한다 前條第二項但書의境遇에도 또한 같다

第百三條 (除斥忌避申請에對한處理) ①除斥 또는忌避申請이 있을 때에는審判에依하여決定하여야 한다

②審判官은그除斥 또는忌避에對한審判에關與하지 못한다

③第一項의決定에는理由를붙이어야 한다

④第一項의決定에는不服을申請하지 못한다

第百四條 (審判節次의停止) 除斥 또는忌避의申請이 있을 때에는그申請에對한決定이 있을 때까지審判節次를停止하여야 한다

第百五條 (審理) ①第八十九條第一項第一號의無效의審判은口頭審理에依한다 但審判長은申請에依하여 또는職權으로써書面審理로 할 수 있다

②前項의審判以外的審判은書面審理에依한다 但審判長은申請에依하여 또는職權으로써口頭審理로 할 수 있다

③口頭審理는이를公開하여야 한다 但公益 또는風俗을害할念慮가 있을 때에는例外로 한다

第百六條 (準用規定) 審判에서는通譯을할 수 있다民事訴訟法第百三十三條의規定은通譯에對하여이를準用한다

第百七條 (參加의申請및審判에依한許, 否의決定) ①審判參加의申請에는參加申請書를提出하여야 한다

②審判長이參加申請書를受理한 때에는이를當事者 및參加人에게送達하고期間을指定하여이에異議申請의機會를주어야 한다

③參加申請이 있을 때에는審判에依하여그許, 否를決定하여야 한다

④第百三條第三項 및第四項의規定은前項의規定에依한決定에對하여이를

準用한다

第百八條 (證據調査) ①審判에서는申請에依하여 또는職權으로써證據調査를할 수 있다

②前項의證據調査는管轄法院이나其他法院에이를委囑할 수 있다

③民事訴訟法中證據調査 및證據保全에關한規定은前二項의規定에依한證據調査에이를準用한다 但審判官은拘引을命하거나 또는保證金을供託하게 하지 못한다

④證據保全申請은審判繫屬中에는그事件의審判長에게, 審判請求前에는特許局長에게하여야 한다

⑤特許局長은審判請求前에하는證據保全申請에關與한審判官을指定한다

第百九條 (審判의進行) 當事者 또는參加人이指定期間內에節次를받지 아니하거나期日에出頭하지 아니하여도審判長은審判을進行할 수 있다

第百十條 (審判請求取下) 審判請求는그審理가終結될 때까지 이를取下할 수 있다 但答辯書提出이 있을 때에는相對方의承諾을얻어야 한다

第百十一條 (職權審理) 審判에서는當事者 또는參加人이申請하지 아니한理由 또는取下한理由에對하여도이를審理할 수 있다이境遇에있어서는그理由에對하여當事者 또는參加人에게期間을指定하여意見陳述의機會를주어

야 한다

第百十二條 (審理, 審決의併合과分離) ①審判官은當事者雙方 또는一方의同一한二以上の審判에對하여그審理 또는審決의併合을할 수 있다

②審判官은前項의規定에依하여그審理의併合을한境遇에도審理 또는審決의分離를할 수 있다

第百十三條 (審決) ①審判은別條의規定이 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審決로써이를終結한다

②前項의審決에는理由를붙이어야 한다

③事件의審決이成熟한 때에는審判長은審理의終結을當事者 및參加人에게通知하여야 한다

④審判長이必要하다고認定할 때에는前項의規定에依하여審理終結을通知한後에도申請에依하여 또는職權으로써審理의再開를할 수 있다

⑤審決은審理終結通知를發한 날로부터二十日以內에이를하여야 한다

第百十四條 (補償金審決) 第五十二條의規定에依한審判에있어서는補償金額에對하여도이를審決하여야 한다

第百十五條 (送達) 第八十七條의規定은審判에對하여도이를準用한다

第百十六條 (準用規定 및適用排除) ①第七十五條第一項, 第二項, 第四項 및第七十六條乃至第八十二條의規定

101111111111

승권

한외에審査에關한書類로서送達을要하는것및送達에關하여必要한事項은 閣令으로定한다

第八十八條 (訴訟節次의中止) 民事 또는刑事訴訟에 있어서必要가 있을때에는法院은特許 또는拒絕查定の確定이 있을때까지그訴訟節次를中止할수 있다

第五節 審判 및 抗告 審判

第八十九條 (審判請求의事項) ① 審判은本法 또는本法에依據하여發하는命令에規定한것을除外하고다음에揭記하는事項에對하여 이를請求할수 있다

一、第六十一條의規定에依한特許 또는特許의無效

二、特許權의權利範圍確認審判

② 前項第一號의無效의審判은利害關係人 및 審査官에限하여 이를請求할수 있다 但 審査官은第十條의規定에違反하거나第六十一條第一項第一號에該當한다는理由로써無效의審判을請求하지 못한다

③ 第一項第二號의確認의審判은利害關係人에限하여 이를請求할수 있다

第九十條 (除斥期間) ① 前條第一項第一號의無效審判은特許 또는第五十六條의許可가登錄된날로부터五年을經過한때에는 이를請求하지 못한다

② 前項의期間은第六十一條第一項第五號에該當한다는理由로써請求한無

效의審判에對하여는同號에該當하게된날의翌日로부터起算한다

第九十一條 (共同審判의請求等) 다

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境遇에는數人이共同審判의請求人이나被請求人이 될수 있다

一、同一特許權에對하여無效의審判을請求하는境遇

二、同一物件 또는方法에對하여同一한特許權의權利範圍에屬하거나屬하지 아니한다는確認의審判을請求하거나請求를當하는境遇와共有特許權에對하여審判을請求하거나請求를當하는境遇

第九十二條 (審判請求節次) ① 審判請求는審判請求書를提出하여야 한다

② 審判請求書에는申請의趣旨 및 그理由를記載하여야 한다

第九十三條 (審判官의構成) 審判請求가 있을때에는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審判하게 한다 但特許局長이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는審査長 또는審査官으로 하여금審判하게 할수 있다

第九十四條 (審判官의指定) ① 特許局長은各審判事件에對하여審判官을指定한다

② 審判官中審判에關與하는데支障이 있을때에는 다른審判官으로 하여금 이를補充한다

③ 審判長은審判官中에서特許局長이

이를指定한다

第九十五條 (審判請求의却下와即時抗告) ① 審判請求書가法令에依한方式에違反한境遇에는審判長은相當한期間을定하여그期間內에欠缺을補正할것을命하여야 한다 所定의手數料을納付하지 아니하는境遇도 또한 같다

② 請求人이欠缺을補正하지 아니할때에는審判長은決定으로써審判請求書를却下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決定에는理由를 붙이어야 한다

④ 第二項의決定에不服이 있는者는即時抗告를 할수 있다

⑤ 前項의即時抗告에關하여는民事訴訟法中即時抗告에關한規定을準用한다

⑥ 抗告狀에는却下된審判請求書를添附하여야 한다

第九十六條 (審判長의職務) ① 審判長이審判請求書를受理한때에는그副本을被請求人에게送達하고期間을指定하여答辯書提出의機會을주고그答辯書를受理한때에는副本을相對方에送達하여야 한다

② 審判에關하여는當事者가提出한書類에對하여相對方으로 하여금答辯書를提出하게하거나當事者에게訊問書에對한意見書를提出하게 할수 있다

第九十七條 (補正不能한請求의却下)

不適法한審判請求로서欠缺을補正할수 없을때에는被請求人에게答辯書提出의機會을주지 아니하고審決로써 이를却下할수 있다

第九十八條 (審判의合意) ① 審判은審判官三人의合意에依하여 이를行한다

② 合意는過半數에依하여 이를決定한다

③ 審判長은그審判事件에關한事務를管掌한다

第九十九條 (審判官의除斥) 審判官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境遇에는審判關與로부터除外된다

一、審判官 또는 그配偶者、配偶者이 있던者가事件의當事者、參加人、特許의異議申請人인 때

二、審判官이事件當事者、參加人 또는特許의異議申請人、親族、戶主、家族의關係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三、審判官이事件當事者、參加人 또는特許異議申請人의法定代理人、 또는 이었던 때

四、審判官이事件에對한證人 또는鑑定人으로서 된 때 또는 이었던 때

五、審判官이事件의當事者、參加人 또는特許異議申請人의代理人인 때 또는 이었던 때

六、審判官이事件에對하여審査官、審判官 또는 判事로서查定、審決 또는

二〇二六二二二